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96호 2023. 1. 25.(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4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3-15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7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거창군 공고 제2023-124호 2023년 하브루타 교육 운영 강사 모집 공고	14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2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2길 56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1. 25.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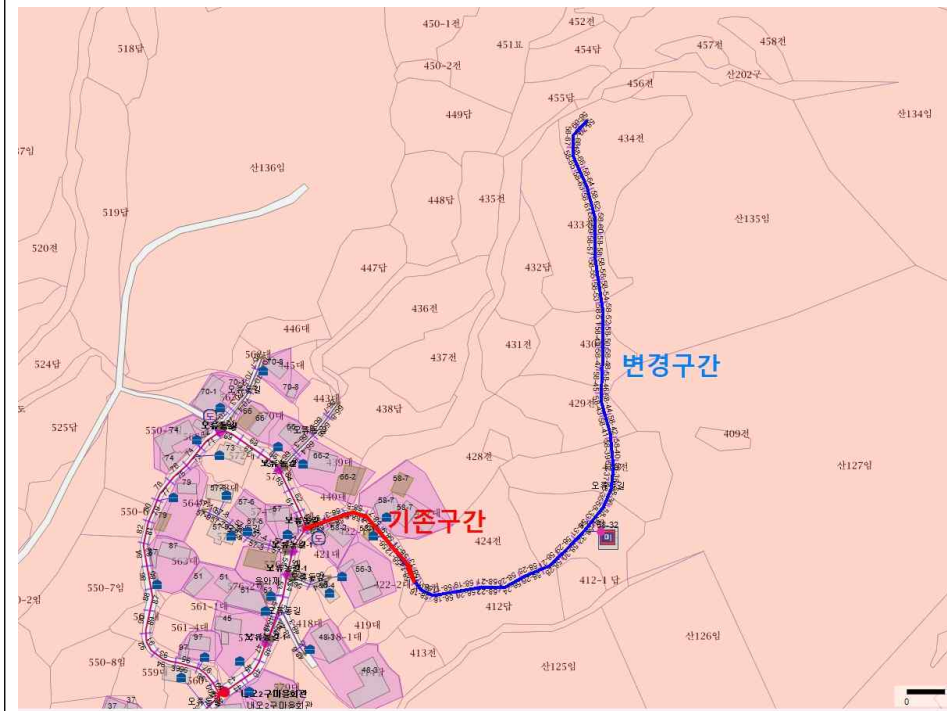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1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주상면	변경 전	오류동길	주상면 내오리 421 (오류동길 58-1)	주상면 내오리 423 (오류동길 58-14)	도면참조	4	없음	종속구간 연장	직권
		변경 후	오류동길	주상면 내오리 421 (오류동길 58-1)	주상면 내오리 434 (오류동길 58-70)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거창군 어린이 전문 수영교실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6세 어린이가 취학 전 무료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 안 (안 제3조의 2)

○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 거창군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안 (안 제1조의3)

○ 어린이 수영교실 대상자 중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 면제 대상 신설

- 대상 : 6세 어린이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56조

7. 입법예고기간 : 2023. 1. 20. ~ 2. 9. (20일간)

8.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2. 9.(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국민체육센터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우)50132
 - 전화 : 055)940-8771, FAX: 055)940-877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이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4조(개방제한)</u>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p>	<p><u>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u> ① <u>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u> ② <u>군수는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u></p> <p><u>제4조(개방제한)</u>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u>군</u>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p>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어린이 수영교실 대상 등)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어린이 수영교실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수영장의 사용료와 강습비 면제는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수영교육을 받는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1조의3(어린이 수영교실 대상 등) ①</u> <u>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어린이 수영교실은</u> <u>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u> <u>로 한다.</u></p> <p><u>② 수영장의 사용료와 강습비 면제는</u> <u>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수영교육을 받는</u> <u>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u></p>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023년 하브루타 교육 운영 강사 모집 공고

거창군의 「2023년 하브루타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를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거창군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담당부서	모집분야	모집인원	활동내용
인구교육과	하브루타 강사	10명 정도	청소년 하브루타 교육 운영

2. 활동사항

구분	찾아가는 하브루타 교육	청소년 하브루타 특강
활동기간	2023. 6. ~ 7. / 4회 2023. 9. ~ 10. / 4회	2023. 9. ~ 10. / 10회
활동시간	각 학교 신청에 따름	19:00-21:00
장소	신청 초등학교 15곳 정도	청소년수련관
운영방법	방문 대면 교육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
강사료	시간당 50,000원(1회 2시간)	시간당 50,000원(1회 2시간)
기타사항	-학습일정 고려하여 강사별 회차 배정 -강사활동 희망자는 매월 1회 강사 보수교육 참여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창군 거주자
- 거창군에서 주관한 하브루타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생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1. 20.(금) ~ 2. 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kimsh84@korea.kr)
- 제출서류 : 강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선발방법 및 일정

- 선발방법 : 서류심사(주소지,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 결과발표 : 2023. 2. 10.(금) / 개별통보
- 강사위촉 : 2023. 2. 23.(목) 16: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담당(☎940-8825)으로 문의

【서식1】

2023년 하브루타 교육 운영 강사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이름	□남 / □여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 메 일
주소			
학 력	기 간	학교명	전공(학위)
주 경 요 력	기 간	직 장 명	담 당 업 무
자 면 격 허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활동범위 (중복 가능)	찾아가는 하브루타 교육		청소년 하브루타 특강
<p>위와 같이 거창군 하브루타 교육 강사로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하브루타 교육 운영 강사 선발 심사(서류전형)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경력확인 조희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최종학력, 전화번호, 이메일, 주요경력 등
- 자격, 경력, 최종학력 이외의 학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생교육 강사 선발 관련 문서 보존
기한 완료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에 제한이 있으며, 선택항목 중 자격·경력의 동의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제공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